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3호로 2010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.
(안 제12조, 제15조,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7까지,
제179조의6부터 제179조의10까지.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안 제12조, 제15조, 제16조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였음.
-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의 세입증감 효과는 없으며 별도 의견은 없음.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세법 [본조신설 2010.1.1]

제3관 재산분

제176조의3(과세표준)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.

제176조의4(세율) ①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.

②시장·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.

③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.

제176조의5(면세점) ①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6조의6(징수방법과 납기 등) ①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②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.

③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
④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항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

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1.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: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
2.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: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

제176조의7(신고의무)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제3관 종업원분

제179조의6(과세표준)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.

제179조의7(세율) ①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.

②시장·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.

제179조의8(면세점) ①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9조의9(징수방법과 납기) ①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.

②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
③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항에서 "산출세액"이라 한다)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1.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: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
2.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: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

제179조의10(신고의무)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.

지방세 세목조정에 따른 신고·납부(요약)

1. 지방소득세 신설

기 존		신 설		
주민세	특별징수	지방소득세	소득분	특별징수
	종합소득세할			종합소득세분
	양도소득세할			양도소득세분
	법인세할			법인세분
사업소세	종업원할	주민세	종업원분	
	재산할		재산분	

※ 시행일시 : 2010년 1월 1일(2010년 최초 신고분부터 시행)

-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단순히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
- 세율, 납기를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제도 그대로 유지
 - ▶ 주민세(소득할) → 지방소득세(소득분)
 - ▶ 사업소세(종업원할) →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
 - ▶ 사업소세(재산할) → 주민세(재산분)
 - ▶ 주민세(균등할) → 주민세(균등분)

2. 주요 용어 및 개념정의

가. 지방소득세 소득분(구 소득할주민세)

- 구 성 : 법인세분, 특별징수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
- 납세의무자 : 법인세·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
- 세 율 : 법인세·소득세액의 10%
- 납 기 :
 - ▶ 법인세분 :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신고납부
 - ▶ 소득세분 :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
 - ▶ 특별징수분 :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나. 지방소득세 종업원분(구 종업원할사업소세)

- 납세의무자 :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
- 세 율 : 종업원 급여총액의 0.5%
- 납 기 :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

다. 주민세 재산분(구 재산할사업소세)

-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매년 7월1일)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주
- 세 율 : 1㎡당 250원
- 납 기 : 매년 7월1일 ~ 7월31일